

## 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신인 | 인 * *(39.01.21) 귀하    |
| 주소  |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새월길 **** |

밀양농업협동조합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5년 06월 26일자로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밀양농업협동조합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밀양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밀양농업협동조합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my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5. 06. 10. 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□ / ○

(단위: 원)

| 대출과목  | 계좌번호              | 최초대출원금     | 대출원금잔액     | 이자        | 법적절차비용 | □ / ○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일반대출금 | 061-6807-6***-*** | 20,000,000 | 20,000,000 | 4,328,504 | -      | 부     |
| 일반대출금 | 061-6805-8***-*** | 20,000,000 | 20,000,000 | 4,606,305 | -      | 부     |
| 계     | 2건                | 40,000,000 | 40,000,000 | 8,934,809 | -      |       |

\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\*\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\*\*\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밀양농업협동조합 (055-350-6742)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5 년 06 월 11 일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양도예정인 | 밀양농업협동조합<br>밀양시 밀양대로 1777(삼문동)<br>조합장 이 성 수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(☎055-355-85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